

제 1 교시

조경민 수능 국어 분석서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 수능)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text{BIS 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geq 8(\%)$$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I’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I’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 II’ 협약이 도입되었다.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①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

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②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바젤 III’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 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③받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④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⑤말랑말랑한 법(soft 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hard law)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⑥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1. 밑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내용과 그 변화 양상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한 국제적 기준이 제정된 원인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의 규범을 감독 권한의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③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필요성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수용되는 규범의 필요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논증하고 있다.
- ④ 특정한 국제적 기준과 관련된 국내법의 특징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규범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설정 주체가 바뀐 사례를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서 규범 설정 주체가 지닌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2.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 ③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 ④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3. BIS 비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 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 ②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 ③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
- ④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 ⑤ 바젤 III 협약에 따르면,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완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보완된 BIS 비율 규제를 은행이 준수할 수 있다.

4. 밑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 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은 아래 표와 같다. 갑 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으며, 바젤Ⅱ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다. 그 이외의 자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한다.

항목	자기자본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후순위채무
금액	50억 원	20억 원	40억 원

항목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시장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국채	회사채	
금액	300억 원	300억 원	400억 원

- ① 갑 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
- ② 갑 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 ③ 갑 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 ④ 갑 은행이 바젤 I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 원이 되겠군.
- ⑤ 갑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바젤 III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

5.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위원회가 국제 금융 현실에 맞지 않게 된 바젤 기준을 개정한다.
- ② 바젤위원회가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에 바젤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한다.
- ③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준수 의무가 있는 바젤 기준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다.
- ④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강제성이 없는 바젤 기준에 대하여 준수 의무를 이행한다.
- ⑤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제도화하여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 ② ㉡: 8%가 넘도록
- ③ ㉢: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 ④ ㉣: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
- ⑤ ㉤: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될지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 수능)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조약과 국제 관습법의 정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성질과 정의는 머릿속에 때려박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권고적 효력과 법적 구속력을 구분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이야기를 첫 문단에서 하면, 그 뒤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Q.1 BIS 비율 규제는 앞선 개념 중 무엇과 연결되나요?

A.1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 위원회'는 앞에 나온 '경제 관련 국제기구'이고, 'BIS 비율'은 '결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권고적 효력만 있고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요. 그런데 BIS 비율 규제가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은 '법적 구속력'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마찬가지로, '규범적 성격'='법적 구속력의 성격'으로 이해합니다.

이 문장을 통해, 지문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경제/법 지문은 보통 문제 상황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여러 시도를 하므로, 각각의 시도가 문제의 어떤 부분에 작용하는지 의식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것은, '일반적 경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BIS와 같은 사례는,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일반적' 특성을 지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주는 '효과'는 갖는다는 얘기죠 (헛갈리겠지만, 이해해봅시다). 두 개념이 비슷해보이지만 전혀 다를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BIS 비율은 은행의 채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text{BIS 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geq 8(\%)$$

->이런 수식에도 좀 익숙해져 봅시다. 자기자본이 위험가중 자산에 비해 너무 적으면 안되겠다는 생각 정도는 하고 다음 문장을 봅시다.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자기자본은 그냥 세 개념(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후순위 채무)를 더하면 되니 쉽습니다. 반면 위험가중자산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다소 주의하여 읽어야 합니다. 단순히 (보유 자산)x(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Σ(각 자산)x(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로 읽어야 옳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 Σ는 뒤에 있는 값들의 합을 말합니다) '각 자산'은, 전체 보유 자산에 포함된 자산이고, 본문에 나온 '보유 자산'은 '각 자산'을 말합니다. 이렇게 읽지 않으면 가중치 계산에 있어 큰 혼란이 옵니다.

킬러 포인트 : 전체는 부분으로 칭할 수 없지만, 부분(각 자산)은 전체(보유 자산)로 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획일적으로' 부여되므로, 100%는 다 100%고 0%는 다 0%라는 얘기입니다.

+) '가중치'의 의미가 잘 감이 안 온다면, 17 6월 퍼셉트론 지문을 펼쳐보세요. 웬만한 개념들은 전부 기출에 있습니다. 사실 가중치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도, 위의 공식에서 위험 가중치가 너무 커지면 위험가중자산(분모)의 값이 커지므로, BIS 기준을 충족하기 힘들다는 점을 생각했으면 문제를 풀기에 충분합니다.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그동안은 '신용 위험'은 반영되었지만, '시장 위험'은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후에 '시장 위험'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의식하며 읽읍시다.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

도록 하였다.

->BIS 비율 공식에서 위험가중자산만 건드리고 있습니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I'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달리'가 나왔죠. 뭐가 다르죠?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한다는 점이 시장 위험이 신용 위험과 다른 부분입니다.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I'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뭔가 바뀌나 봅니다.

2004년에 '바젤 II' 협약이 도입되었다.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바젤 II 협약을 읽는 올바른 자세는 당연히 바젤 I 협약과 비교하며 읽는 것입니다. 원래는 신용 위험만, 바젤 I 협약부터는 신용 위험과 시장 위험을, 그리고 바젤 II 협약은 신용 위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위험 가중 자산의 위험 가중치에 반영합니다. 당연히, 바젤 II 협약에도 시장위험은 고려됩니다. 위에 제시된 부분은 '대체'된 부분이 아니라, 단순히 바젤 I 협약에 '추가된' 내용일 뿐이에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바젤 I 때는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만 은행이 선택하는 것이었는데, 바젤 II에서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도 은행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전에는 OECD 국가의 국채면 무조건 0%, 회사채는 무조건 100%였죠. 바젤 II의 위험 가중치와, 바젤 I 이전의 위험 가중치가 다르다는 것은 모두 알겠지만, 이전에는 한 집단 안(OECD 국가의 국채 or 회사채)의 모든 위험 가중치가 같았다면(0% / 100%), 바젤 II부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3번 문제(실제 시험지에서는 39번)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헛갈릴 수 있는 점. 신용도와 위험 가중치는 반비례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가중치 뭔지 아직도 모을까봐 예시도 들어주네요. 그냥 가중치를 곱해서, (참고로, N%를 곱한다는 것은 $\frac{N}{100}$ 을 곱한다는

거... 아시죠?) 그만큼을 위험가중자산에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까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을 고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두 번째인 내부 모형입니다. 은행이 직접 방식을 만들고, 감독 기관의 허락을 받아서 쓰는 거라네요.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필요시'=예외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이 뭔가요?

예, BIS 비율이죠? 이게 기억이 안 난다면, 독해력과 정보 처리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 BIS 비율이 규제 기준을 초과할 수 있게 하면서, 경직된 기준을 보완-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최근에는 '바젤 III'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 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이전 모든 기준들과의 차이점입니다. 분자가 더 작아질테니, BIS 기준 충족이 더 어려워지리라는 점은 생각합시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자기자본'은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후순위 채무'이었는데, 바젤 III 협약에서는 자꾸 자기자본을 건드리네요. 역시 이전 기준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Q.2 '관련 기준'은 뭘 말하나요?

A.2 '이처럼' 나왔으니까 보통 앞 문장이 근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전 두 문장에서 자기자본의 기준을 계속 건든 것을 말합니다.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 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이 나왔습니다.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만든 BIS를 도입했답니다. 생각하면서 읽는 친구라면

‘왜?’를 던지며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아, 그냥 자기네가 믿을 만하다는걸 증명하기 위해 BIS를 도입하여 시행했던 거라네요.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 Q.3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다는게 무슨 얘기죠?

A.2 앞 문장과 붙여 읽어야 합니다.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믿을 만하지 못하면 자리를 못 잡거나, 발을 못 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BIS를 도입했던 거다, 라고 이 문단 전체를 연결하여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 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첫 문단에 나왔죠. 이렇게 이어지네요. ‘의무’는 주는데 ‘감독 권한’이나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Q.1의 포인트**를 짚고 넘어갔더라면 크게 막히지 않는 문장일 것입니다.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말랑말랑한 법(soft 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말랑말랑한 법’의 특성은 그냥 ‘바젤 협약(기준)’의 특성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ex.이전의 한국) 다들 믿음을 주기 위해 지키는 뭐 그런 성질들이요.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hard law)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딱딱한 법’이 뭐겠어요? 그냥 ‘말랑말랑한 법’, 즉 ‘바젤 협약’의 특성과 반대되는, 이를테면 법적 구속력을 지닌 법이겠죠. 그럼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는 얘기는 법적 구속력이나, 명시적인 합의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내용과 그 변화 양상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한 국제적 기준이 제정된 원인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의 규범을 감독 권한의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③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필요성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수용 되는 규범의 필요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논증하고 있다.
- ④ 특정한 국제적 기준과 관련된 국내법의 특징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규범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설정 주체가 바뀐 사례를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서 규범 설정 주체가 지닌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정답 : ① BIS의 내용이 제시되고, I,II,III으로 발전되는 모습이 보이고, ‘말랑말랑한 법’으로서의 규범성을 지니죠.

2.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 ③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 ④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정답 : ③ 말랑말랑한 법의 특징이죠.

② 바젤II에서는 시장위험을 추가적으로 고려했고, 바젤III에서는 단기후순위채무를 제외하고, 기본자본 비율의 하한선을 세우면서 자기자본의 개념을 바꾸었죠.

④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지키지 않으면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게 되어 금융 시장에서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3. BIS 비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 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 ②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 ③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
- ④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 ⑤ 바젤 III 협약에 따르면,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완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보완된 BIS 비율 규제를 은행이 준수할 수 있다.

정답 : ④ 바젤 I 은 시장 위험의 측정만, 바젤 II 는 신용 위험의 측정도 은행이 측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① 제가 읽으면서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바젤 I 에서 회사채는 무조건 위험가중치 100%입니다. '신용도'는 '신용 위험'과 관련된 것이고, 이게 반영되는 방법이 바로 위험가중치입니다.
 - ②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 -> 요구한 은행도 있고, 아닌 은행도 있을 수 있을 테니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 +)②번 선지의 경우, '동일할 수도 있겠군'으로 나왔다면 옳고, '다르다'로 나왔다면 틀린 선지입니다. '-하다', '-일지도 모른다', '-겠군'은 작은 차이지만 답을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평가원이 이걸 '동일할 수도 있겠군'으로 쓰진 않을 거예요.
- ③ 바젤 II 부터는 국채가 0~150%, 회사채가 20~150%이므로, 바젤 I 때와는 달리 국채의 위험 가중치가 회사채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BIS 비율이 높아지려면 자기자본에 대한 위험 가중자산이 줄어들어야 하고,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려면 위험 가중치가 줄어야 하는데, 이 경우 위험 가중치가 국채와 회사채 중 뭐가 더 높은지 모르니, BIS 비율이 높을 수도, 낮을 수도, 같을 수도 있는거죠. 알 수 없는 겁니다.
 - ⑤ 본문에서 바젤 III 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이 6%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채무를 뺐으므로, 자기자본은 (기본자본)+(보완자본)이 된 것이죠.

$$\text{BIS 비율}(\%) = \frac{(\text{기본자본}) + (\text{보완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geq 8(\%)$$

그런데 기본자본이 만약에 엄청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보완자본이 0%가 되어도 BIS 기준을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2%'라는 서술은 틀린 것이 됩니다.

- ③, ⑤ 선지는 해설에 나온 바와 같이 '반례'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4.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 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은 아래 표와 같다. 갑 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으며, 바젤II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다. 그 이외의 자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한다. ->국채의 위험 가중치는 아직 알 수 없네요.

항목	자기자본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후순위채무
금액	50억 원	20억 원	40억 원

항목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시장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국채	회사채	
금액	300억 원	300억 원	400억 원

$$\text{BIS 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요 정의에 맞게 계산하면, $\frac{50\text{억} + 20\text{억} + 40\text{억}}{300\text{억} + 300\text{억} + 400\text{억}} = \frac{110\text{억}}{1000\text{억}}$

대략 10%보다 조금 더 나오네요.

- ① 갑 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
 - ② 갑 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 ③ 갑 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 ④ 갑 은행이 바젤 I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 원이 되겠군.
 - ⑤ 갑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바젤 III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
- ① 10%를 넘으니까 8%를 상회합니다.
 - ② 위험 가중치가 50% -> 20%가 되었다면, 위험가중자산은 줄었을 것이고, 분모가 줄었으니까 BIS 비율은 높아졌겠조.
 - ③ 둘이 똑같이 위험가중자산은 300억입니다. 위험가중자산은 실제 자산에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이죠(위험 가중치 × 실제 자산 = 위험가중자산). 따라서, 둘 중 실제 자산이 더 큰 값일수록, 위험 가중치는 낮았을 겁니다. 이건 수학이라기보단 산수고, 산수라기보단 논리입니다!
 - ④ <보기>에서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가 50%입니다. 바젤 I에서는 100%였조. 당연히 두 배가 됩니다.
- 정답 : ⑤ 바젤 III에서 단기후순위채무가 빠집니다. 거기서 보완자본이 10억이 늘면 $\frac{50\text{억} + 30\text{억}}{1000\text{억}} = 8\%$ 가 될 것 같으나... 이렇게 되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5%밖에 안돼서, 6% 제한에 걸리게 되어 기준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5.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위원회가 국제 금융 현실에 맞지 않게 된 바젤 기준을 개정한다.
- ② 바젤위원회가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에 바젤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한다.
- ③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준수 의무가 있는 바젤 기준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다.
- ④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강제성이 없는 바젤 기준에 대하여 준수 의무를 이행한다.
- ⑤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제도화하여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정답 : ⑤ 강제성이 없음에도,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본문에 나온 **말랑말랑한 법**의 사례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례는 ⑤뿐입니다.

② 요청한 적 없습니다.

③, ④ 일단 바젤위원회 '회원(구속을 받는다는 얘기)'의 얘기기 때문에 걸러집니다.

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 ② ㉡ : 8%가 넘도록
- ③ ㉢ :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 ④ ㉣ :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
- ⑤ ㉥ :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될지

정답 : ③ 그냥 금융 거래를 하기 힘들어진다는 얘깁니다. 바젤 위원회를 가입하고 안하고는, 애초에 '말랑말랑한 법'인 바젤 협약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④ 첫 문단의 '결정' 얘기와도 이어집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